##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32 발의연월일: 2025. 1. 20.

발 의 자 : 김남희 • 김 윤 • 장종태

임미애 · 송옥주 · 김우영

윤후덕 · 용혜인 · 이연희

남인순 · 김문수 의원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결정으로 범죄 중단에 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할수 있음.

그런데 현실에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뿐 아니라 연 인관계나 직장동료 등 사적으로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주 발생하고, 반려동물을 해치는 방식으로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스토킹행위의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 이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 보호에 큰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형량을 상향하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스토킹행위의 대상을 가족에 준하는 사적으로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살해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신설함(안 제2조제1호).
- 나. 판사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령하는 피해

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등).

- 다. 법원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7조의7 신설).
- 라. 판사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로 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전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 7조의8 신설).
- 마.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9 신설 등).
- 바. 19살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살 이상의 사람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 사.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제20조제2항).

#### 법률 제 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가족"을 "가족,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적으로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상대방등이 주거에서 기르는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학대, 살해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상대 방등을 위협하는 행위

제3장을 제4장으로 한다.

제3장(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1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 제17조의5(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제17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 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스토킹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 제17조의6(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 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수 없다. 다만,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없다.

- ⑦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잠정조치"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본다.
- 제17조의7(신변안전조치) ①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 · 귀가 시 동행
  - 2.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 3.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4.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②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8(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7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

다.

-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17조의 6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 제17조의9(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17조의10(항고와 재항고) ① 제17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17조의6제5항 단서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17조의8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수 있다.
  -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11(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 죄를 저지른 사람
- 2. 19살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19살 이상의 사람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2.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8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보호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	1
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	
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	
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	가
인, <u>가족</u> (이하 "상대방등"	<u>가족, 그 밖에 가족에</u>
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	준하는 사적으로 친밀하고
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막아서는 행위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아. 상대방등이 주거에서 기</u>
	르는 「동물보호법」 제2
	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을 학대, 살해하거나 이러
	한 행위를 하겠다고 상대
	방등을 위협하는 행위

2. ~ 4.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신 설>

## 2. ~ 4. (현행과 같음)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17조의5(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제17조의6에 따른 피 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하 "피해자보호명령사 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스토 킹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 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17조의6(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2. <u>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u> <u>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u>

- 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 을 이용한 접근 금지
-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 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 경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3 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 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 과할 수 없다. 다만, 판사는 피 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 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피

   해자보호명령의
   종류를
   변경하

   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종

<신 설>

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을 초과할 수 없다.

①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 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잠정조치"는 "피해자보호명령" 으로 본다.

제17조의7(신변안전조치) ① 법원 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 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 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 1.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원 에 출석·귀가 시 동행
- 2.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 시설 등으로 인도

<신 설>

- 3. <u>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u> 적 순찰
- 4.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조치
- ②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8(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7조의6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 17조의6제3항 및 제4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

<신 설>

<신 설>

<u>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u> 다.

제17조의9(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수 있다.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 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 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의10(항고와 재항고) ① 제
17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
령(제17조의6제5항 단서에 따
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17조의8에 따른 임시보호명
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
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

<u><신 설></u>

<u>제3장</u> 벌칙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생 략)

② 흥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 는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본원합 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본원합 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 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 조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11(위임규정) 피해자보호 명령사건의 조사·심리의 방법 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u>제4장</u> 벌칙

제18조(스토킹범죄) ① (현행과 같음)

-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제20조(벌칙) ① (생 략)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 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 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④ (생 략)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2. 19살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19살 이

상의 사람

제2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질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한 사람
- 2.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피해
   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8제
   1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③ • ④ (현행과 같음)